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배준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16093

발의연월일: 2022. 6. 22.

발 의 자:배준영·윤창현·김용판

홍석준 · 정운천 · 정동만

정우택 · 김상훈 · 최승재

박수영 · 조명희 · 류성걸

서일준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휘발유 및 경유 등 각종 유류에 대한 탄력세율 제도를 두어 경기 조절, 가격 안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세율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금리인상에 따른 물가상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정세 혼란 등으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한국석유공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입 원유의 가격이 100달러가 넘었고, 2022년 5월 이후 국내 전국 평균 유가와 서울 평균 유가는 각각 2,000원, 2,10 0원을 상회하는 실정임. 국제정세의 영향으로 유가 급등세가 가파른 만큼 서민·영세사업자 등의 유류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물가 안정이라는 정책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탄력세율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휘발유 및 경유 등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세율을 50%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경제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내 기업의 대 외경쟁력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조제7항). 법률 제 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별소비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7항 본문 중 "100분의 30"을 "1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세율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① ~ ⑥
(생 략)	(현행과 같음)
⑦ 제2항과 제3항의 세율은 국	7
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	
여 경기 조절, 가격 안정, 수급	
조정에 필요한 경우와 유가변	
동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 조	
달에 필요한 경우 그 세율의 1	<u>1</u>
<u>00분의 30</u> 의 범위에서 대통령	<u>00분의 30(제2항제4호 각 목의</u>
령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u>경우에는 100분의 50)</u>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과세물품 중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과세물품에 대해서는 본	
문에 따라 세율을 조정하는 경	
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에 따	
른 산출세액과 조정 후 세율에	
따른 산출세액 간 차액의 한도	
를 과세물품당 100만원의 범위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	
다.	
⑧ ~ ⑫ (생 략)	⑧ ~ 12 (현행과 같음)